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의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1178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및 2026. 12. 3. 시행)됨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등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 규정(안 제14조의4)
- 나.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택배서비스종사자 간 체결하는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안 제29조제3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정보시스템 구성·운영 및 교통안전교육
실시 업무 위탁(안 제40조)

라. 고유식별정보 처리 업무에 보험가입 확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무
추가(안 제42조)

마. 택배업 표준계약서 미준수 시 택배사업자 등록취소 처분기준 마련
(안 별표 2 제2호)

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의 보험등 가입 여부 미확인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4 제2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2. 13. ~ 3. 25.)

3) 재입법예고(2026. 4. 00. ~ 0. 00.)

3) 행정규제 : 보험가입확인 정보시스템 구축, 표준계약서

작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 법 제19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정보
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현황 및 변동 내용(운전가능 연령 범위 등 해당 차량의 실제 운전자가 피보험자로 정상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의 구성·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정보

제2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점과 택배서비스종사자 간 계약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술한 용어의 정의

가. “택배”라 함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운송을 위탁받은 화물을 집화, 분류, 배송 등의 과정을 거쳐 수화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나. “집화”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화물을 “위탁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하여 하차, 적재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 “분류”라 함은 서브터미널 등 택배화물의 분류시설·장소에서 다수의 화물을 택배기사 개인별로 구분하는 작업을 말한다.

라. “배송”이라 함은 분류된 화물을 택배 운송차량에 상차하여 차량운행을 통해 운송장에 기재된 장소에서 고객에게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마. 택배의 집화, 배송에 수반되는 전산입력 및 택배운임 수취, 고객응대, 스캔 등 부수적인 업무는 집화, 배송업무로 본다.

2.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계약기간

3.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위탁지역 또는 담당구역

4. 영업점과 택배서비스종사자 간 계약 시 집화 및 배송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와 관련된 사항

5. 영업점과 택배서비스종사자 간 계약 시 분류작업 수행 여부 및 분류 수수료에 관한 사항

6. 영업점과 택배서비스종사자 간 계약 시 계약기간 중 사전 합의 없이 담당구역, 수수료 지급 기준 등 거래조건을 수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위탁자의 준수사항
 7. 영업점과 택배서비스종사자 간 계약 시 수탁자의 최대 작업 시간이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내용 등 작업시간에 관한 사항
 8. 영업점과 택배서비스종사자 간 계약 시 법 제10조 및 제11조 등에서 정한 절차를 기재한 계약 갱신 및 해지 절차
 9. 별도의 합의서의 효력 범위와 본 계약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부속합의서가 본 계약의 내용에 배치 또는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부속합의에 관한 사항
- 제40조제2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성·운영
 3.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실시
- 제42조제1항제4호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9조의5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 별표 2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다목을 라목으로 한다.

다..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 제8호	경고	등록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제1항 제9호	경고	등록취소

별표 4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2호타목 및 파목을 각각 러목 및 머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제2호차목, 파목 및 거목의 경우에는 같은 목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타. 법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1항 제9호의4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파. 법 제1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해야 하는 것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1항 제9호의4			
1)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기간이 3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3)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하. 법 제19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1항 제9호의5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거. 법 제1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해야 하는 것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1)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3)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법 제51조제1항 제9호의5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너. 법 제1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 제9호의6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1항 제10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부 칙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제3호 및 별표 4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4조의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 자등의 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 한 정보) 법 제19조의5제4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정보 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 차 등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 장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현황 및 변동 내용(운전가능 연령 범위 등 해당 차량의 실제 운 전자가 피보험자로 정상적으로 보 장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시 스템의 구성·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정보
제2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①·② (생 략) <u><신 설></u>	제2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서에 반 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 다.</u>

1. 영업점과 택배서비스종사자 간 계약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술한 용어의 정
의

가. “택배”라 함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운송을 위탁받은 화물을 집화, 분류, 배
송 등의 과정을 거쳐 수화인의 주택, 사
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나. “집화”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화물을 “위탁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운
송하여 하차, 적재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 “분류”라 함은 서브터미널 등 택배화
물의 분류시설·장소에서 다수의 화물
을 택배기사 개인별로 구분하는 작업을
말한다.

라. “배송”이라 함은 분류된 화물을 택배
운송차량에 상차하여 차량운행을 통해
운송장에 기재된 장소에서 고객에게 인도
하는 것을 말한다.

마. 택배의 집화, 배송에 수반되는 전산
입력 및 택배운임 수취, 고객응대, 스캔 등
부수적인 업무는 집화, 배송업무로 본
다.

2.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구체적으로 명
시한 계약기간

3.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위탁
지역 또는 담당구역

4. 영업점과 택배서비스종사자 간 계약 시

	<u>집화 및 배송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와 관련된 사항</u> 5. <u>영업점과 택배서비스종사자 간 계약 시 분류작업 수행 여부 및 분류 수수료에 관한 사항</u> 6. <u>영업점과 택배서비스종사자 간 계약 시 계약기간 중 사전 합의 없이 담당구역, 수수료 지급 기준 등 거래조건을 수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위탁자의 준수 사항</u> 7. <u>영업점과 택배서비스종사자 간 계약 시 수탁자의 최대 작업 시간이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내용 등 작업시간에 관한 사항</u> 8. <u>영업점과 택배서비스종사자 간 계약 시 법 제10조 및 제11조 등에서 정한 절차를 기재한 계약 갱신 및 해지 절차</u> 9. <u>별도의 합의서의 효력 범위와 본 계약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부속합의서가 본 계약의 내용에 배치 또는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부속합의에 관한 사항</u>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생략)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② ----- ----- -----

관계기관·단체 또는 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생략) <u><신설></u> <u><신설></u> 2. ~ 10. (생략) ③·④ (생략)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 ----- -----. 1. (현행과 같음) 2. <u>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성·운영</u> 3. <u>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실시</u> 4. ~ 1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u>법 제19조의5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연 락 처	(044) 201 - 4158